

예산총칙

201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99,838,212	32,995,146
일반회계	837,746,228	25,132,387
특별회계	262,091,984	7,862,760
공기업특별회계	180,789,546	5,423,68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3,517,906	1,905,53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1,962,305	1,558,86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5,309,335	1,959,280
기타특별회계	81,302,438	2,439,073
주택사업특별회계	3,250,938	97,528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444,950	133,34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200,000	36,000
가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119,567	3,587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924,384	57,732
교통사업특별회계	8,514,541	255,43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2,958,586	1,288,758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8,889,472	566,68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38,68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